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10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1.05.11~05.30(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유인환(총괄)
 - 검사위원 : 최호영(일반회계 세입)
 - 검사위원 : 고재용(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김태준(특별회계, 금고결산, 채권, 채무)
 - 검사위원 : 안영식(공유재산, 물품관리, 기금)

평창군결산검사위원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 창 군 수 귀하

2011년 5월 3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대표감사위원	유 인 환	(인)
감사위원	최 호 영	(인)
감사위원	고 재 용	(인)
감사위원	김 태 준	(인)
감사위원	안 영 식	(인)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4
2) 세출	5
2. 일반회계	
1) 세입	6
2) 세출	6
3. 특별회계	
1) 세입	7
2) 세출	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9
2) 채권	9
3) 채무	10
4) 공유재산	10
5) 물품	11
5. 세입·세출외현금	11
6. 검사결과	12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3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10년도의 일반회계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9)	396,063,067,450	400,706,659,812	391,820,314,383	228,497,840	8,657,847,589
당해년도 (2010)	321,598,111,100	331,996,131,306	321,369,483,723	1,550,811,640	9,075,835,943

가. 세입결산 개요

- 2010년도 실제수납액은 321,369,483,723원으로 예산현액의 9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6%로 나타남.

※ 2009년도

- 실제수납액 : 391,820,314,383원 (예산현액의 99%)
- 징수결정액 : 400,706,659,812원 (예산현액의 98%)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9)	324,810,234,000	71,252,833,450	396,063,067,450	351,187,688,473
당해년도(2010)	286,423,029,000	35,175,082,100	321,598,111,100	291,557,922,472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5,175,082,100 (466,101,473)	9,700,296,877	40,632,625,910	1,047,175,805	4,876,469,478
20,341,661,958	9,698,526,670	29,811,561,251	917,710,802	8,552,188,491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8% 감소한 286,423,02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5,175,082,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1,598,111,100원임.
- 지출액은 291,557,922,472원으로 예산현액의 91%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9)	396,063,067,450	35,175,082,100 (466,101,473)	15,228,786,500 (466,101,473)	4,722,929,060	15,223,366,540	8.8%
당해연도 (2010)	321,598,111,100	20,341,661,958	7,574,012,690	2,242,770,330	10,524,878,938	6.3%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년도 (2009)	315,951,088,530	319,681,147,614	312,609,684,805	228,497,840	6,842,964,969
당해연도 (2010)	255,973,922,830	262,282,853,473	254,425,569,560	1,032,653,120	6,824,630,793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254,425,569,560원으로 예산현액의 99.3%이고, 징수결정액은 262,282,853,473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임.

※ 2009년도

- 실제수납액 : 312,609,684,805원 (예산현액의 98.9%)
- 징수결정액 : 319,681,147,614원 (예산현액의 101%)

2) 세출

(단위 : 원)

연도별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9)	259,898,505,000	56,052,583,530	315,951,088,530	285,259,613,741
당해연도(2010)	233,571,090,000	22,402,832,830	255,973,922,830	234,981,924,162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2,402,832,830	8,288,641,959	27,350,071,064	1,007,085,915	3,940,152,319
14,403,641,678	6,588,356,990	19,443,645,398	856,974,672	4,183,029,048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33,571,090,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402,832,8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5,973,922,830원임.
- 이월사업비는 14,403,641,678원으로 예산현액의 5%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9)	315,951,088,530	22,402,832,830	9,549,137,870	4,101,241,560	8,752,453,400	7%
당해연도 (2010)	255,973,922,830	14,403,641,678	6,956,058,330	1,958,967,420	5,488,615,928	5%

3. 특별회계 세입 · 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9)	80,111,978,920	81,025,512,198	79,210,629,578	-	1,814,882,620
당해연도 (2010)	65,624,188,270	69,713,277,833	66,943,914,163	518,158,520	2,251,205,15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66,943,914,163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며, 징수결정액은 69,713,277,833원으로 예산현액의 1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6%임.

※ 2009년도

- 실제수납액 : 79,210,629,578원 (예산현액의 98.8%)
- 징수결정액 : 81,025,512,198원 (예산현액의 101%)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9)	64,911,729,000	15,200,249,920	80,111,978,920	65,928,074,732
당해년도(2010)	52,851,939,000	12,772,249,270	65,624,188,270	56,575,998,310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2,772,249,270 (466,101,473)	1,411,654,918	13,282,554,846	40,089,890	936,317,159
5,938,020,280	3,110,169,680	10,367,915,853	60,736,130	4,369,159,443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52,851,93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772,249,27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5,624,188,270원임.
- 이월사업비는 5,938,020,280원으로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대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2009)	80,111,978,920 (466,101,473)	12,772,249,270 (466,101,473)	5,679,648,630 (466,101,473)	621,687,500	6,470,913,140	15.9%
당해년도 (2010)	65,624,188,270	5,938,020,280	617,954,360	283,802,910	5,036,263,010	9%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9)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2010)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437,982,001	6,273,043,878	6,468,619,478	195,575,600	10,711,025,879
식품진흥기금	103,567,472	7,823,761	13,878,361	6,054,600	111,391,233
사회복지기금	3,707,251,727	154,013,379	267,513,379	113,500,000	3,861,265,106
재난관리기금	127,162,802	627,372,682	703,393,682	76,021,000	754,535,484
체육진흥기금	500,000,000	525,618,090	525,618,090	-	1,025,618,090
통합관리기금	-	4,958,215,966	4,958,215,966	-	4,958,215,966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서
기금현재액은 2009년도 4,437,982,001원 보다 6,273,043,878원이 증가한 10,711,025,879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2009)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174,258,981	637,348,049	994,156,976	5,817,450,054
일반회계	4,077,582,690	493,907,000	207,142,860	4,364,346,830
특별회계	1,288,026,120	1,061,020	683,036,720	606,050,420
기 금	808,650,171	142,380,029	103,977,396	847,052,804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9년말 현재액 6,174,258,981원에서
- 2010년도에 637,348,049원이 발생, 994,156,976원이 소멸되어
- 2010년도말 현재액은 5,817,450,054원임.

3)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20,277,600,000	9,727,183,100	13,705,983,100	3,978,800,000		30,004,783,100
일반회계	18,000,000,000	10,705,983,100	13,705,983,100	3,000,000,000		28,705,983,100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2,277,600,000	△978,800,000	-	978,800,000		1,298,8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9년도말 현재액 20,277,600,000원에서
- 2010년도에 13,705,983,100원이 발생, 3,978,800,000원이 소멸되어
- 2010년도말 현재액은 30,004,783,10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9년말현재액	2010년말현재액	증감(△)
용도별	합 계	1,978,178,341,258	2,046,598,178,453	68,419,837,195
행정 재산	계	1,883,901,592,846	1,949,908,192,144	66,006,599,298
	공공용재산	1,847,218,082,178	1,878,403,214,644	31,185,132,466
	공용 재산	34,857,779,284	37,539,481,119	2,681,701,835
	기업용재산	1,825,731,384	33,965,496,381	32,139,764,997
일 반 재 산		94,276,748,412	96,689,986,309	2,413,237,897

가. 2010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009년말 현재액1,978,178,341,258원에서
68,419,837,195원이 증가한 2,046,598,178,453원으로

- 토지 127,432,000㎡ 343,789,938,666원
- 건물 203,548㎡ 220,617,967,040원
- 기타 1,373,561건 1,482,190,272,747원임.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10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33종	수량	364	21	0	21	0	9	9	376
	금액	2,552,528	290,278	0	290,278	0	33,829	33,829	2,808,978

가.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9년말 현재액 2,552,528,420원보다 256,449,860원이 증가한 2,808,978,280원으로서 취득 290,278,860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3,829,000원 처분함.

5. 세입 · 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10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2,073,856,489	△342,003,463	7355880905	7697884368	1,731,853,026
보 증 금	446,509,430	55,428,340	82,741,604	27,313,264	501,937,770
보 관 금	1,339,834,101	△422,228,333	5,430,490,764	5,852,719,097	917,605,768
잡종금등기타	287,512,958	24,796,530	1,842,648,537	1,817,852,007	312,309,488

가. 2010년도말 현재액은 1,731,853,026원으로
2009년도말 2,073,856,489원보다 342,003,463원이 감소함.

※ 읍·면, 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금액임.

6. 검사결과

□ 총 평

- 2010년도 일반회계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2010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등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액이 전년대비 약35% 감소하고 설계변경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결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특정 부서의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 실제수납액은 254,42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2,28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예산액은 233,571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40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5,974백만원으로 지출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 세입결산액은 66,94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576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은
 - 현재액 1,732백만원으로 2009년보다 34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금회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적(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건의)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군비) 반납 미이행 (환경과)	16P
2	주요사업(20억이상) 추진상황 부진 (건설방재과)	17P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약금 과지급분 여입지연 (주민생활지원실)	18P
4	미집행(100%)사업비 불용처리 부적정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9P
5	예산전용(변경) 부적정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21P
6	결산서 작성 오류 (건설방재과)	22P
7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관리 소홀 (주민생활지원실)	23P
8	국민주택융자금 채권 회수 관리 소홀 (도시과)	24P
9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결손처분 부적정 (도시과)	25P
10	새마을 조직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자치행정과)	26P

지 적 (건의)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1	공사대금 지출회계 부적정 (대관령면사무소)	27P
12	일반회계 결산차인잔액 반납 미이행 및 지연반납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대관령면사무소)	28P
13	환지청산금(대화면) 관리 부적정 (건설방재과)	29P
14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건설방재과)	30P
15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관리 소홀 (해당 실·과·소)	31P
16	지방세 과오납 발생 억제노력 우수 (재 무 과)	32P
17	기타잡수입(세외수입) 중복징수 결정 (농업기술센터)	33P
18	세외수입 중복징수 결정 (문화체육과)	34P
19	과년도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처리실적 우수 (재 무 과)	35P
20	도로점용료 부과 부적정 (건설방재과)	36P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군비) 반납 미이행

○ 현 황

단위:천원

회 계	내 용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비 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594,206	5,766,151	△171,945	

○ 문 제 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의 일반회계(환경과) 기타 회계전출금(701-01)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5,766,151천원이 총7회에 걸쳐 수질개선특별회계(환경과) 관리계좌(228-74-000292)로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되었고, 이후 제3회 추경예산에서 환경과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701-01)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71,945천원(군비)이 감액되었으나, 환경과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 된 금액을 감액하여 반납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171,945천원의 잔액을 발생시켰음.

감사자 의견

○ 환경과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특회계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주요사업(20억이상) 추진상황 부진

○ 현 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기투자	추진상황	종합진도	비 고
하천재해예방사업	25,726	2008.1.1~2012.12.31	3,500	교량1개소 하천정비	25%	13.6%
두일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700	2009.1.1~2013.12.31	2,620	축제호안 0.6km	20%	22.4%

○ 문 제 점

주요사업(총사업비 20억이상)에 대한 검사결과, 위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검사자 의견

○ 향후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계획과 군비 투자계획 등, 예산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위탁금 과지급분 여입지연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보조)	178,915,000	183,316,900	△4,401,900	
민간경상보조(307-02)	99,930,000	99,725,910	204,090	
민간위탁금(307-05)	78,985,000	83,590,990	△4,605,990	

○ 문 제 점

노인돌봄미바우처사업 위탁금은 매분기 시작월 20일까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지정계좌에 위탁하여야 함에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조기집행을 사유로 상반기(2010. 2. 28)와 하반기(2010. 9. 27) 2회에 걸쳐 총84,838,000원을 납부하였고 강원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3회추경에 78,985,000원으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5,853,000원을 과다위탁케 하였으며 사업추진 결과 총 4,401,900원의 예산잔액을 발생케 한 후, 회계연도가 지난 2011. 4. 29일 세외수입으로 여입하였음.

□ 감사자 의견

○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미집행(100%)사업비 불용처리 부적정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액	비 고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포상금)	2,000	2,000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7,000	7,000	
주민생활 지 원 실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지원(장학금)	500	500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수혜금)	1,000	1,000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민간위탁금)	600	6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무관리비)	2,000	2,000	
	청소년보호(기타보상금)	1,000	1,000	
자치행정과	이반장,새마을지도자육성지원(사무관리비)	4,896	4,896	
	군정홍보관리(행사실비보상금)	2,000	2,000	
환 경 과	폐기물 처리시설관리(행사실비보상금)	2,000	2,000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액	비 고
산 립 과	산불예방홍보(기타보상금)	2,000	2,000	
	소나무 재선충신고(보상금)	1,000	1,000	
	군유림매목조사인부임(101-04)	2,250	2,250	
도 시 과	개발허가대상지관리(사무관리비)	4,050	4,050	
보건의료원	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국내여비)	300	300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사무관리비)	700	700	
	전염병관리(의료및구료비)	4,090	4,090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행사실비보상금)	250	250	
	국가결핵사업(의료및구료비)	300	300	
	우수한약유통시설지원(공공운영비)	2,000	2,000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관리(공공운영비)	5,000	5,000	
	약초육성전략사업(행사운영비)	1,800	1,800	
	겨울철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민간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 문 제 점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성립 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하나 미집행이 예상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임

□ 검사자 의견

- 100%미집행 예상사업과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추가지출이 필요 없을 경우 추경예산에 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미집행사례가 없도록 할 것.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예산전용(변경) 부적정
-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불용액		
		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문화체육과	평창종합운동장보수	3,490,000	3,490,000	-	-	△30,000	30,000	-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조성	1,906,800	1,886,800	-	20,000	△3,100	40,000	△9,000
관광경제과	생태학습형백룡동굴개방사업	696,000	696,000	-	-	△5,000	5,000	-
산 립 과	자연휴양림조성	1,714,000	1,694,000	-	20,000	△18,200	18,200	-
건설방재과	대화-개수간(군도4호)터널설치	3,980,000	3,980,000	-	-	△70,000	70,000	-

○ 문제점

부서장은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의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여건 변동의 명확한 사유없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임.

□ 검사자 의견

- 향후 사업예산편성시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 : 결산서 작성 오류
-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하천재해예방사업(보조)	3,500	2,100		1,400	2011년 당초예산
	4,746	2,848	1,898		2010년 예산

○ 문제점

결산서 작성 시에는 결산관계서류의 내용 등, 관계 계수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건설과 소관사항 2010년 하천재해예방사업(보조)에 대한 결산 자료 작성시 2011년도 예산(3,500백만원)을 2010년도 사업비로 착오 기재 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음.

□ 검사자 의견

- 향후 결산서 작성시에는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7

○ 제 목 :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자금 관리 소홀

○ 현 황

단위:원

용자금액	용자잔액	기한내이자	연체이자	납기도래원금	비 고
763,000,000	554,016,986	28,967,098	264,068,720	293,032,760	66건

○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기금 용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채권보존을 위한 재산 조회 및 독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관리대장에 독촉 및 관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야 하나, 별첨 현황(66건)의 경우 채권보존을 위한 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음

검사자 의견

○ 향후 용자금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대장정비 등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채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채권보존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불입 채권현황 66건에 대하여는 회수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8

○ 제 목 : 국민주택용자금 채권 회수 관리 소홀

○ 현 황

단위:원

채권최고액	합 계	용자금잔액	이 자	연체이자	채권최고액 대비부족액
244,700,000	605,568,270	125,314,520	121,112,960	359,140,790	360,868,270

○ 문제점

국민주택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야 하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 대비 360,868,270원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압류나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는 했지만 물건에 대한 추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검사자 의견

○ 향후 용자금에 대하여는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일부 채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압류조치 등을 이행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9
- 제 목 : 국민주택용자금 채납세대 결손처분 부적정
- 현 황

단위:원

결손처분총액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원금대비 결손처리비율	비 고
518,156,000	85,494,000	70,587,000	362,075,000	423%	

○ 문 제 점

국민주택용자금 채납22세대에 대하여 채무자 무재산 등 더 이상 채권 확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금 85,494,000원, 약정이자 70,587,000원, 연체이자 362,075,000원의 총 합계금 518,156,00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연체이자만 362,075,000원을 결손처리 하였는바, 이는 원금(85,494,000) 대비 423%에 달하는 것으로, 초기에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조치가 미흡하였음

검사자 의견

- 향후 채권액 발생 채무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회수와 수시 압류를 이행하여 채권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0
- 제 목 : 새마을 조직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현 황

단위:원

보조사업자	대 상	부적정 정산금액	비 고
평창군새마을회	실업급여 2010.3월,5월분	164,750	

○ 문 제 점

평창군새마을회 조직운영사업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상주 근무자 인건비 집행 시, 실업급여는 기관과 개인이 2분의1씩 납부하여야 하나 평창군새마을회에서는 2010년 3월, 5월의 실업급여금 전액을 기관에서 납부한 것으로 정산한 바, 개인 부담금 164,750원을 부당하게 정산한 사실이 있음.

검사자 의견

- 평창군새마을회 조직운영사업 보조금 중 부당하게 정산된 164,750원을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할 것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1
- 제 목 : 공사대금 지출회계 부적정
- 현 황

단위:원

사 업 명	지출금액	지출회계	비 고
황계8리 천덕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16,540,000	군비계좌집행	

○ 문 제 점

대관령면에서는 2010. 12. 31 대관령면 황계8리 821(천덕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대금 16,540,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평창군비 계좌에서 착오 지출한 후, 소규모주민지원 사업계좌에서 평창군비계좌로 지출하여 정리하였음.

검사자 의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2

○ 제 목 : 일반회계 결산차인잔액 반납 미이행 및 지연반납

○ 현 황

2010년 일반회계 차인잔액

단위:원

구 분	세 입 액	지 출 액	차 액
결산금액	254,425,569,560	234,981,924,162	19,443,645,398
실 제	254,425,569,560	234,981,924,162	19,282,280,648
차 이			-161,364,750

○ 문 제 점

2010년도 일반회계의 결산금액은 19,443,645,698원이나 실제금액은 19,282,280,648원으로 161,364,750원이 차이가 발생하였음. 차이가 발생한 사유로는 실과에서 회계연도 지출을 완료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의회사무과에서 50,084,220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9,041,362원을 각각 미반납 하였고 대관령면사무소에서는 52,239,168원을 회계연도 마감후인 2011. 3. 30일 반납조치하여 결과적으로 결산금액과 실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

감사자 의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 연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3

○ 제 목 : 환지청산금(대화면) 관리 부적정

○ 현 황

단위:천원

미 청 산 현 황		추 진 실 적		비 고
징 수	교 부	징 수	교 부	
18건/54,182	64건/156,846	4건/11,702	8건/5,113	2007회계년도 결산 검사이후 추진실적 및 현황

○ 문 제 점

2007년도 결산검사시 환지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청산토록 지적후 건설과에서 “징수 대상자와 교부 대상자에게 납부 및 청구를 독려하여 2009년도에 청산 완료한다”는 취지의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회 결산검사시에 확인한 결과 일부 필지와 금액에 대한 환지청산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대책 수립과 청산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검사자 의견

○ 건설과에서는 대화면의 환지청산관련 자료를 받아 징수와 교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실질적인 환지 청산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한 청산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4

○ 제 목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 현 황

단위:원

구 분	건 수	부과금액	부과일시	비 고
201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76	53,380,110	2010.04.29	
201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미 부 과			

○ 문 제 점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6조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점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01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76건 53,380,110원은 2010. 04. 29 부과하였고, 2011년 정기분은 미부과 상태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1조 등에 따라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제반절차를 미 이행한 사실이 있음

검사자 의견

○ 201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조속히 부과토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5

○ 제 목 :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관리 소홀

○ 현 황

단위:천원

년 도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미 수 액
2009	95,581,210	91,540,599	30,995	4,009,614
2010	43,114,639	38,738,616	109,535	4,266,486

○ 문 제 점

2010년도 미수납액이 4,266,486,803원이며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42.4%(2009년 46%) 저조하므로 세외수입 주관 실과에서는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검사자 의견

○ 세외수입은 실과소별로 부과·관리되어 납기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료관리와 부과 등 납기 내 관리에 대한 해당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발생된 체납건에 대하여는 지방세 규정에 따라 신속한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6

○ 제 목 : 지방세 과오납 발생 억제노력 우수

○ 현 황

단위:천원

년 도	부 과 액	징 수 액	환 수 액	과오납비율
2009	21,678,960	18,641,738	370,927	1.7%
2010	22,808,073	19,326,811	306,646	1.3%

○ 잘 된 점

2009년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18,301건 370,927,090원이고, 2010년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3,036건 306,646,980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건수 16.6%, 금액 82%를 줄임으로서 국민신뢰도 회복 및 공평과세에 크게 기여하였음.

감사자 의견

○ 지방세는 공정하게 과세하고 적정하게 징수해야 하는 바, 과·오납이 과다 발생되면(이중부과, 징수착오부과징수 등) 국민의 행정신뢰도가 크게 실추되므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7

○ 제 목 : 기타잡수입(세외수입) 중복징수 결정

○ 현 황

단위 : 원

납 세 자	세 목	부과일시	부 과 액	비 고
박 정 희	기타잡수입	2010. 12. 27	2,018,740	이행강제금
		2011. 02. 28	2,018,740	

○ 문 제 점

원주시 박정희의 이행강제금(종부리 186) 2,018,740원을 부과함에 있어 2010. 12. 27 1차 부과하였음에도 2011. 2.28 이중으로 부과하여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성실납세 풍토정착에 역행한 사실이 있음.

검사자 의견

○ 이중부과 된 이행강제금 2,018,740원을 부과취소(감액대상)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8

○ 제 목 : 세외수입 중복징수 결정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일시	부 과 액	납 입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징수결정	2010. 05. 11	519,710	519,710원 (2010.10.29)
	2010. 10. 11	519,710	

○ 문 제 점

2010년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을 수납 처리하면서 2010.5.11 금519,710원을 부과(징수결정)하고, 2010. 10. 11 금519,710원을 이중 부과(징수결정)하여 [2010. 10. 29 한 번만 납입] 현재까지 금519,710원이 체납금액으로 남아 있음.

검사자 의견

○ 이중부과(징수결정)된, 2010년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보조금 집행 잔액 금519,710원을 부과취소(감액대상)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9

○ 제 목 : 과년도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처리실적 우수

○ 현 황

1)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천원

회계년도	부 과 액	징 수 액	미 수 액	징 수 율
2009	4,303,661	1,157,826	3,145,835	26.9%
2010	4,716,732	1,425,630	3,291,102	30.2%

2) 체납처분실적

단위:건/천원

회계년도	압 류	공 매	번호판영치	비 고
2009	162/3,080,281	25/88,404	151/33,826	
2010	1,101/12,666,058	25/69,618	70/54,345	

○ 잘 된 점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공평하게 과세하고 성실하게 납세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성실납세자는 격려하고,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독촉 및 체납 처분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압류,공매,영치 338건에서 2010년 1,196건으로 전년 대비(354%) 크게 향상 하였고, 징수액(1,425,630천원)도 전년대비 23%의 징수율 제고 효과를 거양하였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0

○ 제 목 : 도로점용료 부과 부적정

○ 현 황

단위 : 원

납 세 자	부 과 액	부과일시	당초납기	비 고
한국전력 제천전력관리처	5,618,120	2010. 05. 03	2010. 05. 31	

○ 문 제 점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장이 수하리142-13, 수하리 193-17번지에 송전망 구성을 위한 전력구 설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점용기간 2007. 4. 25 ~ 2016. 12. 31) 평창군에서는 2010. 5. 3.(납기 2010. 5. 31) 점용료로 5,618,12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 및 기부채납에 따른 도로점용료 처리계획(건설방재과 69호 2008. 8. 12.)에 의거 기부채납에 달하는 기간동안은 점용료 면제 대상이므로 부과취소(감액대상) 하여야 함..

검사자 의견

- 감액대상인 도로점용료 5,618,12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취소(감액대상)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